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



경 상 북 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1. 우리 도(道)에서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출근거가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에 적용할 예정가격(추정가격)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2.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10.10.26)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2. 바.1) “시·도 및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음을 감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나. 시 행 일 : 2011. 1. 1부터. 끝.

경 상 북 도



수신자 예산담당관, 일자리창출단장, 농촌개발과장, 경미정(경북)시장(건설과장), 해양개발과장, 산림복지과장, 산림비즈니스과장, 도시계획과장, 균형개발과장, 치유관광과장, 건축지적과장, 안전정책과장, 낙동강사업팀장, 회계계약심사과장, 소방행정과장, 경상북도종합기술원장,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장,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시설과장),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포항시장(건설과장), 경주시장(도로과장), 김천시장(건설과장), 안동시장(건설과장), 구미시장(건설과장), 영주시장(건설과장), 영천시장(건설과장), 상주시장(건설사업과장), 문경시장(건설방재과장), 경산시장(건설과장), 군위군수(건설과장), 의성군수(건설과장), 청송군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영양군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영덕군수(건설재난방재과장), 청도군수(건설과장), 고령군수(건설방재과장), 성주군수(건설과장), 칠곡군수(건설과장), 예천군수(건설과장), 봉화군수(건설재난관리과), 울진군수(건설방재과장), 울릉군수(건설과장),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주무관 이성균 도로계획담당 박재민 도로철도과장 강두성 국장 01/06 안종록

협조자 담당 차인수

시행 도로철도과-273 (2011. 01. 06.) 접수
우 702-010 대구 북구 산격동 연암로60(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2218 전송 053-950-3629 / lsk045804@korea.kr / 대국민공개

“낙동강 700리 녹색의 물길로”

문서번호	도로철도과 - 95
보존기간	3년
보고일	2010. 12. 4

도 로 계획총괄	도 로 철도과장	건설도시 방재국장	행정부지사	도 지 사
<i>이상준</i>	<i>김영남</i>	<i>이신영</i>	<i>김영남</i>	<i>김영남</i>
협 조	행정지원국장 <i>김영남</i> 상무부지사 회계계약심사과장 <i>김영남</i> 공필수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안)

- ◆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출에 근거가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에 적용할 예정가격 범위를 결정하여
- ◆ 위축되고 있는 지역건설 시장의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도 적용기준 변경(안)**입니다



경 상 북 도
도로철도과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안)

-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출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공사의 규모 결정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건교부훈령 제2009-360호)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 추진배경

-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은 표준품셈에 의한 방법과 실적공사비에 의한 방법을 병행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도는 2009. 2월부터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경기 활성화의 위축 요인이 되고 있음.

II. 개 요

- 실적공사비
 -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노무비·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
- 적용근거
 - 실적공사비는 시·도지사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행안부 예규 제332호'10.10.26)
 - 시·군에서도 도 기준 적용

○ 적용방법 비교

구 분	품셈제도	실적공사비제도
내역서 작성방식	발주기관에서 품셈기준에 따라 적용	국토부에서 결정된 기 시행된 실적단가 적용
단가산출방	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	계약단가를 기초로 축적한 공종별 실적 단가에 의해 계산
직접공사비	재·노·경 단가 분리	재·노·경 단가 포함
간접공사비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직접공사비 기준
설계변경	품목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공사비지수 적용)

※ 단,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 결정

Ⅲ. 적용 현황

○ 타 시도별 적용현황(추정가격)

- 실적공사비 적용시도 : 16개 시도
 - 100억원이상 : 10개(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 70 " : 2개(인천, 경북)
 - 50 " : 1개(서울)
 - 30 " : 2개(대구, 전북)
 - 모든공사 적용 : 1개(경기도)

○ 우리도 시·군의 경우

- 30억원이상 : 영양군, 청도군
- 10억원이상 : 안동시 등 6개 시군
- 5억원이상 : 경주시 등 7개 "
- 1억원이상 : 포항시 등 5개 "
- 미적용 : 울릉군

IV. 검토의견

- 실적공사비 단가 자료수집 대상공사가 대부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포함 (※ 2010하반기 기준 79.6%)
- 2010 상반기 **실적공사비 평균단가**는 2004년 대비 **0.76%상승** 하였으나 건설공사비 지수는 35.9%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단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타 시·도 실적공사비 적용 비교 검토결과 16개시도중 **10개 시·도에서 지역제한 및 대형공사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중("10. 12말기준)

V. 시 행(안)

-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공사의 규모(예정가격)
 - ① 제 1 안 : 100억원 이상(**지역제한 대상 100억원 이하기준**)
 - ② 제 2 안 : 70 "
 - ③ 제 3 안 : 50 "
- 적 용 : 제 / 안으로 시행